

#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	2
주주총회 소집공고 .....	3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5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5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5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6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6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7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7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7
III. 경영참고사항 .....	9
1. 사업의 개요 .....	9
가. 업계의 현황 .....	9
나. 회사의 현황 .....	9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11
□ 재무제표의 승인 .....	11
□ 정관의 변경 .....	13
□ 감사의 선임 .....	18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18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	19



# 주주총회소집공고

2012년 3월 8일

회 사 명 : (주)세아홀딩스  
대 표 이 사 : 김진규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1가 10  
(전 화) 02-3783-8167  
(홈페이지) <http://www.seahholding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양경훈  
(전 화) 02-3783-8167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1기 정기)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1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1. 일 시 : 2012년 3월 23일(금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A(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3. 회의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2)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11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1주당 현금배당금 : 1,75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1명)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당사의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지점,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명의개서 대행회사(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당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예정이며,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행사 결과 찬·반 비율에 따라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가능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질주주께서는 '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송 부 처> 150-88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송부시한> 2012년 3월 16일(※ 주주총회 5영업일 전)

##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에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2년 3월 23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세아홀딩스의 제11기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 사 표 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2012 년    월    일

실질주주 성 명  
주 소

(인 또는 서명)

###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장재룡 (출석률:76%)
			찬 반 여 부
1	2011.01.31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	찬성
2	2011.02.07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참석
3	2011.02.25	제10기 재무제표 승인	찬성
4	2011.02.25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결정	찬성
5	2011.03.25	임원인사	찬성
6	2011.03.30	차입금상환 및 신규차입	찬성
7	2011.04.15	캐나다 Rocan Mines Inc. 증자 참여	찬성
8	2011.04.21	해외 계열사 '세아기차배건' 법인입보(USD)	찬성
9	2011.04.21	해외 계열사 '세아기차배건' 법인입보(CNY)	찬성
10	2011.04.25	(주)사파이어테크놀로지 지분 인수	불참
11	2011.05.04	제12회 무보증 회사채 발행	찬성
12	2011.06.17	자회사 (주)세아이앤티 증자 결정	찬성
13	2011.07.25	해외 계열사 '세아기차배건' 법인입보	찬성
14	2011.08.16	자회사 (주)세아이앤티 운영자금 대여	불참
15	2011.08.19	해외 계열사 '소주세아 정밀금속' 법인입보	찬성
16	2011.10.11	자회사 (주)세아기공 유상증자	찬성
17	2011.11.04	자회사 (주)드림라인 운영자금 대여의 건	불참
18	2011.11.24	자회사 (주)드림라인 운영자금 대여의 건	불참
19	2011.11.25	자회사 (주)세아알앤아이 유상증자(현물출자)	찬성

20	2011.12.09	광물자원공사 소유의 세아엠앤에스 지분 매수	불참
21	2011.12.30	2011년도 임원 성과급 결정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1명	-	30,000	30,000	-
사내이사	3명	-	956,145	318,715	-
계	4명	1,200,000	986,145	246,536	-

주)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외이사 1명을 포함한 총4명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입니다.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지분추가취득	(주)세아엠앤에스	2011.12.28	109	19.6
출자(유상증자)	(주)세아알앤아이	2011.10.11	70	12.5
출자(유상증자)	(주)세아알앤아이	2011.12.26	93	16.8
출자(유상증자)	(주)세아이앤티	2011.06.20	50	9.0
대여금	(주)세아이앤티	2011.08.16~ 2011.12.31	50	9.0
대여금	드림라인(주)	2011.11.07~ 2011.12.28	20	3.6
대여금	드림라인(주)	2011.11.14~ 2011.12.28	30	5.4
대여금	드림라인(주)	2011.11.28~ 2011.12.31	40	7.2
대여금회수	드림라인(주)	2011.12.28	51	9.2

주1)최근사업년도말(2011.12.31)현재의 매출총액(557억원)의 1%(6억원) 이상인 거래를 기재함.

주2)각 자회사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제외함.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세아엠앤에스	지분추가취득	2011.12.28	109	19.6
(주)세아알앤아이	출자(유상증자)	2011.10.11~ 2011.12.26	163	29.3
(주)세아이앤티	출자(유상증자)	2011.06.20	50	9.0
(주)세아이앤티	대여금	2011.08.16~ 2011.12.31	50	9.0
드림라인(주)	대여금	2011.11.07~ 2011.12.31	90	16.2

드림라인(주)	대여금회수	2011.12.28	51	9.2
---------	-------	------------	----	-----

주1)최근사업년도말(2011.12.31)현재의 매출총액(557억원)의 5%(28억원) 이상인 누계거래를 기재함.

주2)각 자회사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제외함.

### III. 경영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 현황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타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지주회사는 크게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는 다른 수익획득을 위한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수익획득 목적의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사의 경우, 사업내용 중 부동산임대업의 비중이 미미하므로 순수지주회사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주회사제도는 독점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금지시켰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과정을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지주회사와 순수지주회사를 구분하지 않음)

현재 국내에는 당사 이외에 다수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증권시장 상장법인들과 다수의 비상장법인들이 순수지주회사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장점으로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 지배구조 개선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내 다수의 기업집단들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4월부터 완화된 지주회사 관련법규(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을 요건 완화: 상장 30%→20%/비상장 50%→40%, 지주회사 부채비율 한도 상향: 100%→200%)가 시행되고 있으며,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도 폐지되는등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이 용이해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지주회사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 나. 회사의 현황

###### (1) 영업개황

당사는 지배목적의 주식소유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로 현행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지주회사 요건(자산총액 기준, 부채비율 기준, 자회사주식 지분을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주식 소유를 통해 2011년 12월말 현재 (주)세아베스틸, (주)세아특수강 등 총 12개 국내 자회사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아래 <표 1> 참조)

<표1> 국내 자회사 현황

(2011.12.31 현재)

자회사명	설립일	주요업종	결산일	당사지분율
(주)세아베스틸	'55.02.04	특수강, 자동차부품 제조	12.31	54.37%
(주)세아특수강	'86.11.01	냉간압조용선재, 마봉강 제조	12.31	69.86%
드림라인(주)	'97.07.31	전기통신회선 설비 임대	12.31	62.36%
강남도시가스(주)	'84.11.21	도시가스 판매	12.31	65%
(주)한국번디	'79.03.30	소경 금속Tube 제조	12.31	80%
(주)세아에샵	'85.12.19	용접재료 제조	12.31	50%
(주)세아네트웍스	'92.06.05	IBS, Network의 SI, ERP	12.31	74.77%
(주)세아이엔티	'91.01.04	Engineering, 설비 제조	12.31	100%
(주)세아엠앤에스 (구: (주)광양합금철)	'06.02.01	합금철 제조업	12.31	83.91%
(주)세아메탈	'94.03.22	스테인레스 선재 제조	12.31	99.62%
(주)세아로지스	'85.02.15	운송업	12.31	100%
(주)세아알앤아이 (구: (주)세아기공)	'96.02.17	광산업 및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12.3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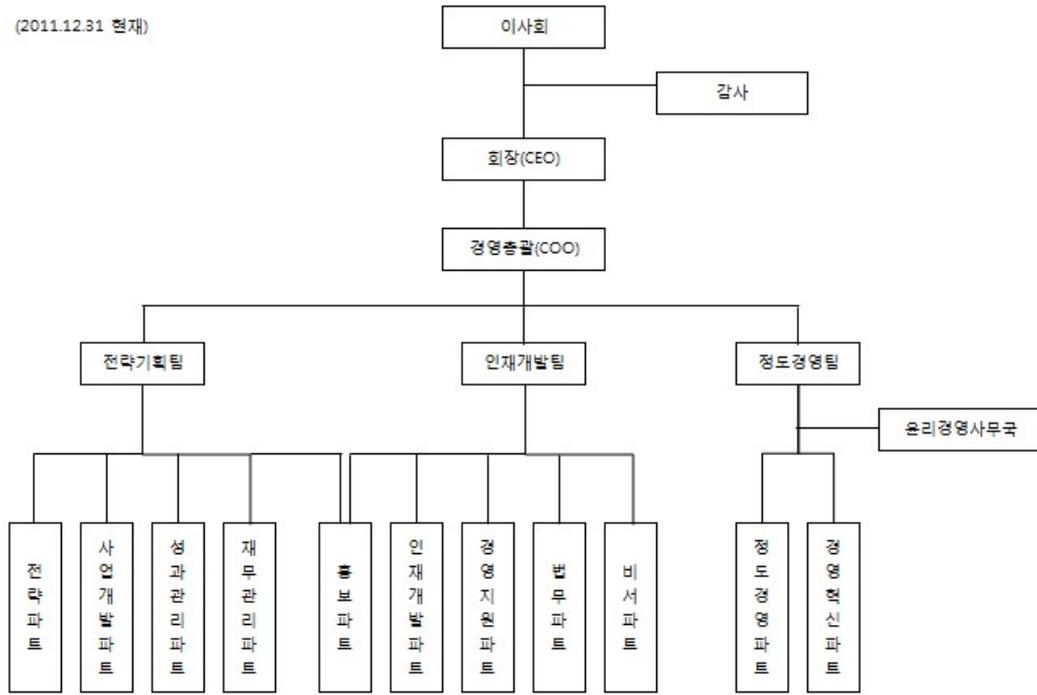
(2) 시장점유율  
- 해당사항 없음

(3) 시장의 특성  
- 해당사항 없음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2011.12.31 현재)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는 지주회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순수지주회사로서 다른 수익획득을 위한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지주회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주요 자회사로는 (주)세아베스틸, (주)세아특수강이 있으며 주요 자회사에 관한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 신규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세아베스틸>

회사의 주요사업은 특수강 제조 매매, 철도차량용품 제조 매매, 형단조품 제조매매, 자동차부품 제조 매매 등 입니다. 한편 신규사업으로 대형단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형 조괴품은 2009년 3월 부터 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주)세아특수강>

회사는 냉간압조용 선재(CHQ WIRE) 및 마봉강(CD BAR) 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BAR TO BAR와 PEELED BAR 사업에 신규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 제11기, 제10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 완료 전 수치입니다.

요약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제 11 기 2011.12.31 현재

제 10 기 2010.12.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1 기	제 10 기
I.유동자산	17,973,499,737	18,756,363,825
II.비유동자산	1,001,424,649,291	1,016,839,904,812
자산 총계	1,019,398,149,028	1,035,596,268,637
I.유동부채	75,202,504,909	144,596,736,212
II.비유동부채	75,650,486,896	19,461,673,989
부채 총계	150,852,991,805	164,058,410,201
I.자본금	20,000,000,000	20,000,000,000
II.기타불입자본	166,514,602,374	166,514,602,374
III.이익잉여금	682,189,823,340	680,289,441,400
IV.기타자본구성항목	(159,268,491)	4,733,814,662
자본 총계	868,545,157,223	871,537,858,436
부채와 자본 총계	1,019,398,149,028	1,035,596,268,637

주)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요약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11 기 (2011. 1. 1 부터 2011. 12. 31 까지)

제 10 기 (2010. 1. 1 부터 2010.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1 기	제 10 기
I.영업수익	55,724,837,934	23,071,858,771
II.영업비용	25,646,685,826	7,195,682,213
III.영업이익	30,078,152,108	15,876,176,558
IV.순금융비용	(23,365,771,220)	(3,393,348,747)
V.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712,380,888	12,482,827,811
VI.법인세비용	(2,554,270,722)	258,894,583

VII. 당기순이익	9,266,651,610	12,223,933,228
------------	---------------	----------------

주)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11 기 (2011. 1. 1 부터 2011. 12. 31 까지)

제 10 기 (2010. 1. 1 부터 2010.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1 기	제 10 기
I. 처분전이익잉여금	125,310,025,840	244,109,486,400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16,411,218,900	231,955,939,545
2. 보험수리적손익	(367,844,670)	(70,386,373)
3. 당기순이익	9,266,651,610	12,223,933,228
II. 이익잉여금처분액	107,698,267,500	127,698,267,500
1. 이익준비금	699,842,500	699,842,500
2. 임의적립금	100,000,000,000	120,000,000,000
3. 배당금	6,998,425,000	6,998,425,000
III.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7,611,758,340	116,411,218,900

주)비교표시된 전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조정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2011년 3월 25일에 처분확정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11기 (2011.1.1~2011.12.31)	제10기 (2010.1.1~2010.12.31)
주당배당금(원)	1,750	1,750
배당금 총액(원)	6,998,425,000	6,998,425,000
시가배당율(%)	1.4	1.3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u>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u></p>	<p>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u>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ahholding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u></p>	<p>- 상법(제289조 제3항) 및 동시행령(제3조의2 제1항)을 반영함.</p>
<p>제8조 (신주인수권) ① ~ ② (생략) &lt;신설&gt;</p>	<p>제8조 (신주인수권)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p>	<p>- 개정상법(제418조 제4항)을 반영함.</p>
<p>제10조 (시가발행) 1. 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발생가액 및 조건은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 2.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관계 법령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다.</p>	<p>&lt;삭제&gt;</p>	<p>- 불필요 조문을 삭제함.</p>
<p>&lt;신설&gt;</p>	<p>제14조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p>	<p>- 개정상법(제469조 제4항)을 반영함. - 현행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는 제14조의2로 조문번호를 수정함.</p>
<p>제28조의2(집행임원) ① 이사회 의 결정사항 및 경영상 중요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집행임원을 둔다. ② 집행임원 의 임명 및 업무분담은 이사회 에서 정한다. ③ 집행임원 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28조의2(비등기임원) ① 이사회 의 결정사항 및 경영상 중요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비등기임원을 둔다. ② 비등기임원 의 임명 및 업무분담은 이사회 에서 정한다. ③ 비등기임원 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 개정상법에 의해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으로 동일 용어의 사용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변경함.</p>

<p>제33조 (감사의 직무 및 감사록) ① ~ ② (생략) &lt;신설&gt;  &lt;신설&gt;  ③ ~ ⑤ (생략)</p>	<p>제33조 (감사의 직무 및 감사록)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u>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u> ④ <u>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u> ⑤ ~ ⑦ (현행과 동일)</p>	<p>- 개정상법(제412조의4)을 반영함.</p>
<p>&lt;신설&gt;</p>	<p>제33조의2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 <u>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u> ② <u>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 개정상법(제400조 제2항)을 반영함.</p>
<p>제35조 (이사의 <u>경업</u>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이 회사 동류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회사의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p>	<p>제35조 (이사의 <u>경업</u>금지) (현행과 동일)</p>	<p>- 법조문(상법 제397조)과의 용어를 통일함.</p>

<p>제39조 (이사회 결의방법)</p> <p>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p> <p>② 이사회 의장은 <u>이사회장이 이에 임한다. 그러나 이사회장 유고시에는 제30조 제2항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③ (생략)</p> <p>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u>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u></p>	<p>제39조 (이사회 결의방법)</p> <p>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u>다만 상법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정한 이사회 결의 사항은 그 결의요건에 따른다.</u></p> <p>② 이사회 의장은 <u>제30조 제2항의 회장이 이에 임한다. 그러나 회장이 유고시에는 제30조 제2항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③ (현행과 동일)</p> <p>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u>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u></p>	<p>- 개정상법(제397조의2 및 제398조)을 반영함.</p> <p>- 개정상법(제391조)을 반영함.</p>
--	--	---

<p>제42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p> <p>① (생략)</p> <p>1. 대차대조표</p> <p>2. 손익계산서</p> <p>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p> <p>&lt;신설&gt;</p> <p>②(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③ 이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④ 이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42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p> <p>① (현행과 동일)</p> <p>1. (현행과 동일)</p> <p>2. (현행과 동일)</p> <p>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p> <p>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p> <p>③(현행과 동일)</p> <p>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p> <p>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p> <p>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p> <p>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 개정상법(제447조)을 반영함.</p> <p>- 개정상법(제449조의2 및 제462조 제2항)을 반영함.</p>
<p>제44조 (이익배당)</p> <p>① 이익의 배당은 <u>금전과 주식</u>으로 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44조 (이익배당)</p> <p>① 이익의 배당은 <u>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u>으로 할 수 있다.</p> <p>② ~ ③ (현행과 동일)</p>	<p>- 개정상법(제462조의4)을 반영함.</p>

	<p>부 칙</p> <p><u>제1조 (시행일)</u> 이 정관은 제1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3항, 제14조, 제33조 제3항 및 제4항, 제33조의2, 제39조 제1항 단서, 제42조 및 제44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u>제2조 (다른 규정에 대한 준용)</u> 이 정관 제28조2(비등기임원)의 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지규정 등 다른 규정상의 “집행임원”은 “비등기임원”으로 본다.</p>	<p>- 개정상법의 시행시기가 2012.4.15.부터 이므로 경과규정을 명시함.</p>
--	--	--

##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인주	1945.02.09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현재)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인주	감사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前)한국종합금융 대표이사	없음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단위:명/천원)

구분	전기	당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4 ( 1 )	4 ( 1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200,000	1,500,000
---------------	-----------	-----------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00,000	100,000